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동당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난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성사시키고 제정 힘써왔던 단체들입니다.

엄청난 논란과 보수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이지만,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은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대영 부교육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렵게 지켜낸 학생인권조례가 보수 성향의 시의원들의 총결집으로 부결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고, 조례의 시행이 한없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017-214-3550)
장서연 변호사(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010-2435-1980)

[첨부자료]

1.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관련 상황 정리
2.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민주통합당의 역할
3. 서울학생인권조례 주요 쟁점 사항 요약
4.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5. 서울학생인권조례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서(학생인권조례운동서울본부)
6.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와 제정 경과
7. 서울, 경기, 광주 학생인권조례 쟁점 조항 비교표



[자료 1]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관련 상황 정리

■ 교과부, 교육청 재의 관련 움직임

- 12월 19일 주민발의로 성사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12월 19일 교과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우려 표명.
: 현장 여론을 고려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와 종교계가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학생지도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등의 이유로 재검토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 교육청에도 압력 행사.
- 12월 20일 교총 등이 중심이 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가 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강력 요청
- 12월 22일 이대영 서울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만한 법률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
- 교과부는 비판여론이 교과부로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

[관련 법조문]

※ 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제1항

-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 받은 경우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재의 요구 시 조례 무산 위기

- 교과부가 요구하면 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반드시 해야만 함. 그렇지 않더라도 이대영 부교육감이 직접 재의를 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의회에서는 2/3 찬성을 해야 조례가 확정될 수 있음. 지난번 총 87명 투표하여 찬성 54명이었고 반대 29, 기권 4명이었음. 재의를 통과하려면 최대 114명중 76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
- 시의회 의원중 민주당 78명, 민주당 성향 교육위원 3명, 한나라당 27명. 19일 본회의 표결 이전에 '민주당 권고 당론'으로 학생인권조례 찬성이 정해졌으나 민주당 의원 중에도 반대자가 있으며 단속이 안되는 상황.

[자료 2]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민주의 미래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의미와 민주통합당의 역할

■ 서울학생인권조례 의미

-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정책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 전면 시행
- 광주에서는 10월 의회 제정, 11월 선포. 내년 전면 시행 예정
- 서울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었음. 그러나 광 교육감에 대한 보수쪽의 공격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 교육·인권단체들이 결집하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를 꾸리고, 주민발의운동 전개. **총 9만7천7백여 시민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성공.**
- 서울에서는 급식지원조례, 시청광장 조례에 이어 3번째로 주민발의가 성사된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임. 또한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에서 제정됨으로써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상위법 정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음.
-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차별로부터의 보호, 학생 복지, 학생자치권과 학생 참여, 헌법적 자유의 행사를 통한 민주시민으로의 역량 향상 등을 목표로 주요 권리조항과 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 등을 규정한 것임.

■ 보수쪽의 총공세

- 한나라당은 학생인권조례 반대가 당론으로 결정돼 있음
- 12월 초 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총결집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사실상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주도했던 이들이며, 'NO 곽노현'을 앞장서 외치고 있음. 무상급식에서 밀린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저지를 교두보 삼아 민주세력을 흔들고 분열시키고 있음.
-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원래 인권과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할 사안이나,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민주와 보수'의 대결구도가 형성돼 있음. 이 사안에서 밀리면 다른 민주/진보 의제들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음.
- 보수단체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무산을 1차 목표로 하여 이것이 성공할 경우 경기도와 광주 조례의 폐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에 있음.

■ 민주통합당의 역할

- 보수단체의 왜곡 선전과 총공세를 뚫고 어렵게 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재의 사태에 내몰리고 결국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은 조례를 방어하지 못한 민주통합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 또한 조례 무산을 계기로 보수 쪽은 이를 총선, 대선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음.
-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지지가 이미 확인된 것임. 학생 인권의 처참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차별과 폭력 없는 교육,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학생인권조례 없이 민주주의 미래도 만들기 어려움.**

[자료 3]

서울학생인권조례 주요 쟁점 사항 요약

□ 차별 금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가장 논란이 되었던 조항이었으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주민발의안 원안이 그대로 통과됨
(성 소수자 인권단체 회원이 시의회에서 농성을 진행하였음)
- 이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 금지 사유를 그대로 가져온 것임.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적극 시정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한 바 있음.
- 경기 : ‘임신 및 출산’, ‘성적 지향’ 문구 있음.
광주 : ‘임신 및 출산’ 문구 없고 ‘성적 지향’ 문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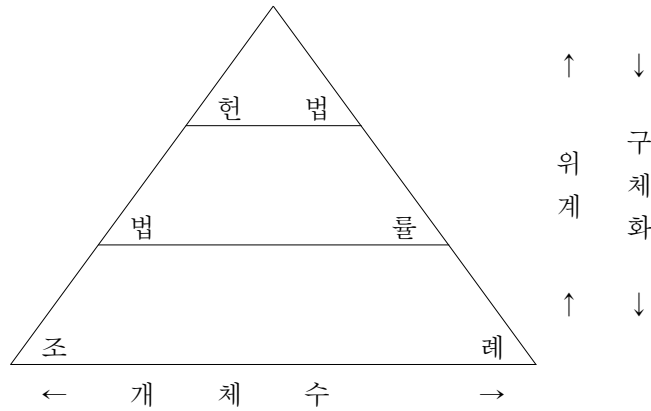
□ 체벌 금지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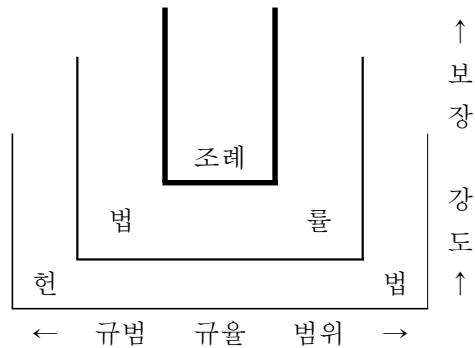
- 보수단체들은 간접체벌까지 금지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에 대해 직접 체벌은 금지되었으나 간접체벌은 허용되었다는 것이 보수단체들의 주장. 교과부도 ‘교육벌’이라는 이름으로 간접체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그러나 체벌 전면 금지는 유엔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바임.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상위법보다 낮은 기준을 규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경우에만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봐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해서 오동석 교수(아주대 헌법학)는 헌법과 법률, 학생인권조례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음¹⁾.

1)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청회 자료집」(2010년 1월 19일)에서 재인용.

<그림 1> 법규범 형식에 따른 위계도



<그림 2> 법규범 형식에 따른 인권보장의 강도



□ 두발 복장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주민발의안 : 두발 복장 자율
 자문위안 : 두발 복장 자율, 교복 착용 여부만 학교 규칙으로 결정
 경기 : 두발 길이 자율, 나머지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 가능
 광주 : 두발 복장 자율, **교복 착용 여부만** 학교 규칙으로 결정
- 두발 자유는 학생인권의 가장 대표적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였음. 현재 대부분의 서울 학교에서는 사실상 두발 규제가 풀려 있는 상황이지만 학생,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임에는 틀림없음. 두발 지도로 인한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생-교사 사이의 갈등을 없앨 수 있음.

□ 휴대폰 소지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 경기, 광주, 서울 최종안 모두 유사함.

□ 종교 자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 경기, 광주, 서울 최종안 모두 유사함. 교과부의 지침과도 유사함.

- 2004년 서울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단식 운동으로 학내 종교 자유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음. 보수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종교 자유 조항이 ‘선교’까지 가로막는다는 왜곡 논리를 퍼뜨리고 있음.

□ 집회 자유 : 집회 자유는 서울에서 최초로 규정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경기, 광주 : 집회 관련 조항 없음

- 촛불집회 참여 등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 재단비리 문제 등으로 학생들이 교내 집회를 열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될 경우 서울에서 교내 집회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자료 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1-11-소수-05
수 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이대영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이소아 변호사)
제 목 : [의견서]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서
전송일자 : 2011. 12. 22. (목)
전송매수 : 11 매(표지포함)

1. 귀 기관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1.12.19(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통과에 대해 우려 표명"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1부.
끝.

2011년 12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I.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령 등과 상충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1. 조례안 제6조가 초중등교육법과 상충하는지 여부

1) 조례안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동조 제1항은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른바 ‘간접체벌’은 교육벌로서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체벌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 체벌과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기준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비준하였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대한민국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유권해석기관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체벌을 법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06년 채택한 일반논평 8이다.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의 독립전문가인 파울로 핀헤이로 교수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A/61/299)에서 모든 국가는 체벌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08년 12월 유엔총회는 아동권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모든 환경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들에게 촉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도 마찬가지로 권고를 2008년에 채택했

다. “아동에 대한 체벌을 포함하여 체벌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또는 심지어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3.1.31.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전면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권고문에는 "한국 교육부가 체벌결정권을 개별 학교당국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일정 형태의 체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하였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10.7. 대한민국 정부에게 높은 학업 스트레스, 아동·청소년 체벌,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표현의 자유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한국 아동·청소년의 권리 및 인권 실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권고문에는 “가정, 학교 등에서 체벌이 지속적으로 만연되고 있다는 이전의 우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율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것을 이행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있다.

2) 초중등교육법령이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이때 징계란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의미한다(동법시행령 제31조). 그리고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동 조문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령 상으로도 최소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벌로서의 체벌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었다.

한편 현행 초중등교육법령은 교육상 필요한 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방법으로 지도”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이때의 지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호하고 있는 학생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로 제한되며(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 4), 훈육·훈계 등 지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이와 같은 조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현행 초중등교육법령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직접체벌 뿐만 아니라 이른바 ‘간접체벌’도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모든 체벌은 금지되어야 하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령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규 내용은 상위법인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인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 보장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조례안 제6조 학생은 체벌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초중등교육법령과 상충하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1년 전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도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례 제6조 제2항).

이제는 이른바 ‘간접체벌’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교육적인 방식의 학생지도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화하는 것이 교육현장에 당면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2011.9.8. 공청회에서 발표된 ‘생활교육혁신방안’을 통해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활지도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교사의 학생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지도 방안의 일환이다.

※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⑤ 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조례안 학칙 관련 조항이 초중등교육법과 상충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4항은 학칙제정에 있어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언론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의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두발·복장의 자유 인정 등 세세한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규율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서울시의회가 수정·의결한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는 우려표명을 했다.²⁾

그러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에는 교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복장의 자유(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휴대폰 등의 소지 및 사용금지(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집회의 자유(제17조 의사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이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조례안 제19조 제1항은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학생 또는 학생자

2) 연합뉴스, 2011.12.20.자 ‘교총 등 `학생인권조례` 제의 요구..논란 확산’

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역시 학생의 참여권 행사를 기본으로 하는 학생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칙제정과 관련하여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는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 즉, 학칙 제정권한은 일차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교육감(공·사립학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립학교)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관할청이 인가권자로서 학칙 제정과 관련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학교장의 학칙 제정권은 학교장의 전권사항이 아니라 제한이 가능한 권한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의 제 규정들은 각 학교의 학칙 제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령상의 기본취지를 구체화하는 것일 뿐,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1.29>

③ 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3.18>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II.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교과부(장관 이주호)는 '11.12.19(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의회에서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의결한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와 관한 교육현장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아래와 같다.

- 교총·전교조·한교조 등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 교육 유관 단체 방문 의견수렴 : 11회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순회 공청회 : 11회
- 11개 지역교육지원청 순회: 각 공청회마다 학생, 교사, 학부모 각 100명이상 참여
-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 마련을 위한 회의: 5회
- 학생인권조례 관련 연구용역 추진 (연구과제명 : 서울지역 학생인권실태 조사 분석 및 서울학생 인권 조례안 개발에 관한 연구)
- 학생인권조례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 6월
- 학생지도 및 학생인권조례 관련 교직단체 의견수렴 : 6월
- 생활교육혁신을 위한 '생활교육 혁신 연속토론회' (4회) 개최 : 4월~7월
 - 교사, 교권을 말하다(4.20)
 - 따돌림,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5.18)
 - 생활평점제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6.22)
 - 학생인권조례시대, 생활지도 근본대안 모색(7.20)
- 학생생활지도 근본대안 마련을 위한 각 학교 의견수렴 : 7.1~7.12
- ※ 총 733개교 회신(초: 312교, 중: 247교, 고: 163교, 유치원: 6교, 특수학교: 5교)
- 학생생활지도 근본대안 수립을 위한 TF 구성·운영 : 7.29~8.18
- 학생인권조례초안 공청회 : 9.8

III. 결론

따라서 2011.12.19.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등 일부의 주장처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할 수 없고, 재의요구의 실체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은, 9만 7천명의 서울시민의 자발적인 주민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중앙정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의미를 훼손하고, 학생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정치 쟁점화하여 이념대결로 몰아가려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끝.

의 견 서

- 발 신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 수 신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님
- 일 시 : 2011년 11월 22일(화)
- 제 목 :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위한 의견서
- 문 의 : 배경내(017-214-3550), hrs3388@gmail.com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후퇴없는 제정을 위한 의견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이렇게 제정되어야 합니다

올해 유난히도 굴곡이달 많았던 서울교육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서울시의회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이때, 우리는 아직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항해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항해에 쏟아진 우려와 폄하를 충분히 덮고도 남은 만큼, '새로운 교육',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에 대한 서울시민의 기대와 열정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 올해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선포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차례입니다.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조례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의 열망으로 빚어낸 주민발의안을 지켜주십시오



한땀 한땀 소중히 모은 주민발의 서명지를 교육청에 전달하는 모습

■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불발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던 주민발의운동이 10만에 이르는 서울시민의 지지 서명으로 기적처럼 성사되었습니다. 급식조례, 서울시청광장조례에 이어 3번째로 서울에서 주민발의가 성사된 조례안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면,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국제인권기준, 국내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넓디 넓은 학생인권의

현실과 새로운 교육을 열망하는 교육주체들의 뜻을 오롯이 반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새로 만들어진 법은 과거의 법보다는 좀더 나은 것이어야 합니다.** “경기도보다 더 진전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광노현 교육감도 일관되게 공약해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법이 지역마다 들쭉날쭉 편차가 심해서도 안 됩니다. 악의적 왜곡이나 부풀려진 오해로 인해 조례의 취지가 훼손되고 기준이 후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가 원칙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최근 논란이 된 몇몇 조항에 대한 비판은 근거가 빈약합니다

유엔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네스코 권고 등 국제사회는 일관되게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유엔 기준들은 또한 “**교실과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고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민주적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논란은 해당 조항 자체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거 있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부러 선택한 악의적 왜곡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니다. 김형태 교육위원은 현재의 논란에 대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지었는데 마치 병원이 생겨서 환자가 생긴다고 말하는 꼴**”이라며 일갈한 바 있습니다.

1.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반드시 명시되어야

■ **40명 학급당 적어도 2~4명 정도의 성소수자 학생이 존재하고 있음이** 국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 이상이 모욕과 구타, 차별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자살 위험에 내몰리거나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4>은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입법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소수자 아동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CRC/C/KOR/CO/3-4, 28~29항).

■ “**성소수자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정책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13개 주와 워싱턴DC는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학교의 의무와 구체수단 등을 담은 교육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영국의

평등법에서도 성소수자 학생에게 포용적 학교환경을 조성할 교육당국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5>는 ‘비차별의 원칙은 권리의 인정과 실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또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편견에 맞설 때에야 비로소 폭력은 멈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별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맞설 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차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거나 차별을 묵인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차별을 부르는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주민발의안에 담긴 차별금지 조항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금지 조항을 모범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 지향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광주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안,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안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발의안은 여기에 ‘성별정체성’을 추가하여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2.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는 교과부도 수용한 정책 방향

■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생 미혼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미혼모 가운데 84.9%가 학업을 중단했고, 절반 이상(54.5%)이 학교로부터 자퇴나 휴학 등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미혼모 중 60% 가까이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06)에 따르면, 전체 미혼모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대 24.9%에서 2000년대에 이르러 53.5%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는 비혼 상태로 부모가 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임신과 학업 중단은 장기적으로 실업과 빈곤으로, 그리고 다시 자녀의 빈곤과 사회적 방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미혼모(아직 출산하지 않고 임신상태에 있는 경우까지 포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교과부**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최소 1곳 이상 마련하기로 하고, 일선학교에 임신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조례로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 지난 10월 6일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도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CRC/C/KOR/CO/34,

28~29항).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 중단과 구별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하거나 휴학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모범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안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집회의 자유 조항 명시되어야

-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생인권 보장, 재단비리 해소’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체벌이나 부당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다수 학교가 학생의 ‘집단행동’을 엄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체벌을 당하거나 학생회장 출마를 저지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같은 부당 징계나 처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집회 개최나 참여를 부추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학생들이 학내에서 집회를 열게 되는 이유는 학교 안 의견 수렴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대다수 학내 집회의 사유는 학생인권 문제나 학교비리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굳이 집회를 열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학교가 이러한 운영 원칙을 저버렸을 경우에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 학교가 이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것은 현실적 근거가 없는 비판입니다. 집회의 목적이나 양태, 규모 등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열리는 학생조회도 집회의 일종입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학내 집회를 교육 경험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개최, 기획,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허가’와 ‘불허’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칠판이나 피켓팅,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평화로운 집회**를 열어 왔습니다.

- 지난 10월 6일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도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정치적 활동을 포함하여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률, 교육부의 지침, 교칙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CRC/C/KOR/CO/3-4, 40~41항). 지난 2008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교내 집회를 학교측이 강제해산하고 체벌 등을 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안에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회

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학교구성원의 안전이나 학습권과 충돌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제한 조항을 삽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4. 종교 자유 조항은 이미 확립된 원칙을 구체화한 것일 뿐

■ 문화체육관광부가 펴낸 <2008년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서울 유·초·중·특수학교 가운데 **종립학교는 무려 256개에 이릅니다.** 이 중 **기독교 설립 학교는 150개로 60%**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근 기독교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종교 자유 조항에 대해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한 미션스쿨의 근본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 **종립학교라 할지라도 학생에게 종교 의식이나 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이미 교육당국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원칙입니다.** 특히 2004년 서울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단식농성으로 '강요 금지'의 원칙은 재확립된 바 있습니다. 이미 많은 종립학교들도 이 원칙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종립학교들이 관리·감독의 공백을 틈타 종교의식 참여를 거부하거나 대체 과목을 편성하지 않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왔고, 학생의 신앙을 이유로 학생회 활동 등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한 학교가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의무 참여를 요구하는 서약서 작성을 강요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2011.2.11 BBS 기사 참조). **학생인권조례의 종교 자유 조항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기준을 재확인하고 구체화하고 있을 따름이지, 새로운 기준을 종립학교에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지난 10월 6일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도 종립학교들이 학생의 종교 자유를 실제로 제한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면서 현재의 조치로는 **종교의 다양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촉진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CRC/C/KOR/CO/3-4, 38~39항).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적 흐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전북에서도 11월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었고, 경남에서도 11월말 주민발의가 성사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와 서울교육의 혁신을 바라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열망과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서둘러 제정해 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자료 6]

■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이르기까지

- ▷ 80년대 말 교육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움트기 시작.
- ▷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 **1991년 대한민국 정부 가입**. 199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에 대해 1차 협약 이행 권고 발표.
- ▷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인권선언문’ 작성이 시도**. 당시 교실붕괴 담론이 기하급수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시기상조를 이유로 학생인권선언문 작성이 중단.
- ▷ 2000년 이른바 **‘노컷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 온·오프라인 청소년모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대체를 중심으로 두발자유 서명운동이 전개. 청소년/비청소년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으면서 짧은 기간 16만여 명의 서명이 모임.
-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학생인권에 관한 진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 ▷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차 권고에 이어 2차 권고 발표**. 1,2차 권고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학교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많다 △학생회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학교 밖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교칙을 통해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교사 등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음. 당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여러 언론을 통해 사회에 전해지면서 유관단체와 교육계, 시민들의 인식에 커다란 전환 계기를 마련.
- ▷ 2004년 서울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 끝에 ‘미션스쿨 내 종교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교과부 지침이 보완되기 시작.
- ▷ **2005년 ‘두발자유와 인권을 위한 청소년 행동의 날’이 개최되는 등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다시 한 번 들끓기 시작**. 학내 종교 자유, 선거권 인하, 정보인권 보장, 청소년노동인권 보장 등 청소년 인권 운동의 의제 역시 확산되기 시작.
- ▷ **2006년 17대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일명 학생인권법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이 제출되면서 법률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계의 운동이 전개**. 각계 단체들이 모인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의 법 제정 운동,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전국행진 등을 통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대대적으로 요구. 2007년 말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부여한 조항이 신설되지만,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을 의심받음.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 **2008년 이른바 ‘학교자율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학생인권에 관련된 교과부 지침이 모두 폐지되고, 교육청 차원의 자율 지침으로 변경.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은 물론, 교육자치입법을 통해 학생인권 기준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할 새로운 여건 조성
- ▷ **2010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2009년 7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

하면서 지방자치법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이 담아내지 못한 구체적인 학생인권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권리회복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 2010년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

▷ 2010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들 당선. 서울, 광주, 전북 등 교육청 산하에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 구성

▷ **2011년 8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최종 성사.**

▷ **2011년 10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 2011년 11월 경남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 **2011년 12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와 제정 경과

▷ 2010년 5월, 교육감 후보들과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 정책협약식' 개최

▷ 2010년 7월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출범

▷ 2010년 7월 17일, 서울시교육청 오장풍 교사 체벌 사건을 계기로 체벌 전면 금지 계획 발표

▷ 2010년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제정

▷ 2010년 9월 27일, '학생인권유린 비호 법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법안'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법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교과부의 체벌 합법화, 학교규정을 통한 학생인권 제한 등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 상위법 개정 시도 움직임.

▷ 2010년 9월말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100인위원회 구성

▷ 2010년 10월 5일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고 조례를 반영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토록 권고.

▷ 2010년 10월 6일 : 서울학생인권조례 시민제안마당 개최

▷ **2010년 10월 18일, 참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 발표.** 수도권 지역 학생 1885명, 교사 1478명, 학부모 959명 대상 조사.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학생 88.6%, 교사들 88.7%, 학부모는 87.6%가 필요하다고 답해.

▷ 2010년 10월 18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개최. 이후 주민발의안 확정

▷ **2010년 10월 2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시작**

▷ 2010년 11월 2일, 81돌 학생의날 맞이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토론회 개최

▷ 2010년 11월~12월 :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실시 이후, 몇몇 언론들의 '위험한 학생론', '학생 vs 교사 대립' 보도 급증. 서명운동 주춤.

▷ **2011년 1월 17일, 교과부 '학교문화선진화방안' 발표. 1월말 학교장의 학생 권리 자의적 제한, 간접체벌 허용 등 반인권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입법 예고**

▷ 2011년 1월 23일, 경기도교육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120여개교가 학생인권조례 취지와 상반되는 학교생활규정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추진에 힘입어

학생인권조례에 버티기로 일관.

▷ 2011년 1월 26일,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국회 토론회> 개최(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공동 주최).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1년 2월 8일, 영하의 추위를 뚫고 매일 주민발의 서명전 돌입. 주말 집중서명전, 행사장 서명도 이어져**

▷ 2011년 2월 15일, <교과부 인권침해 정책, 청소년 긴급 성토크대회> 개최

▷ 2011년 2월 16일,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교사가 말하다> 집담회 개최. '학생인권 vs. 교사 대립 구도'의 허구성을 초중고 교사들이 직접 나서 질타

▷ 2011년 3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결정. 간접체벌을 허용한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의견 발표.

▷ 2011년 3월 6일·7일, <경향신문> '아직도 먼 학생인권' 기획 보도. 서울본부 기획 참여.

▷ **2011년 3월 8일 : 서울 중암중 체벌사건 규탄 기자간담회 개최**

▷ **2011년 3월 14일 :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국무회의 통과.** 애초 학교장에게 학생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이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으로 삭제. 그러나 간접체벌 허용의 불씨 남겨.

▷ 2011년 3월 14일~31일, <학생인권 시민 연속특강> 5회 연속 개최(경향신문·오마이뉴스·한겨레 공동 후원).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범희 용인 흥덕고(혁신학교) 교장,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백창우 시인/작곡가 초청 강연. 매회 시민 1백~3백여 명 참여로 학생인권 관련 높은 공감대 형성

▷ **2011년 4월 7일, <학생인권설문조사(언어폭력, 차별) 결과 및 학생인권 침해 제보 사례> 발표.**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5명 중 1명 꼴로 1주일에 1~2회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욕설, 인격 비하 등)을 경험. 16.6%가 차별을 자주 경험한다고 답하고, 25.7%는 가끔 차별을 당한다고 답해.

▷ **2011년 4월 11일, <4월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우자!> 대시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

▷ 2011년 4월 19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 학생인권으로 이어가자!> 청계광장에서 국립 4.19묘지까지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도보행진 진행.

▷ **2011년 5월 1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시한 마감**(애초 4월 26일 마감이었으나 서울 중구, 강남구 재보궐 선거로 인해 14일 연장). 주민발의 성사 기준인 8만 1885명을 뛰어넘는 **8만5281명의 서명 취합.**

▷ 2011년 5월 11일~19일, 서명지(청구인 명부) 동별 분류 작업

▷ **2011년 5월 20일 10시 30분,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웠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및 대 시민 보고 기자회견 개최**

▷ **2011년 6월 22일~26일 주민발의 보정(추가 서명) :** 유효 서명지가 7만1천여 장 안팎으로 확인되면서 닷새 간 추가 서명과 정보가 누락된 서명지에 대한 보정 작업 진행. 1만5천여 장을 목표로 추가 서명을 받았으나 3만장이 넘게 서명지가 모임.

▷ 2011년 6월 27일~7월 4일, 서명지(청구인 명부) 동별 분류 작업

▷ **2011년 7월 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추가 청구인명부 3만여 장 제출**

▷ **2011년 8월 4일, 법제심의 거쳐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 수리.** 유효 서명인 수 총 97,702명으로 확정

- ▷ 2011년 9월 7일, 광노현 교육감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 ▷ 2011년 9월 8일, 교육감이 구속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공청회 개최. 주민발의안에 비해 상당수 후퇴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본부 이름으로 강력한 수정 요구
- ▷ 2011년 9월 8일,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직무대행을 맡게 될 임승빈 부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추진 재검토 필요하다'며 외압 행사
- ▷ 2011년 9월 13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성명서 발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불필요한 반대 중단 촉구.
- ▷ 2011년 9월 1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시교육청 초안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교육청에 전달. 인권의 원칙에 근거한 조례안 마련,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청 책무 확인.
- ▷ **2011년 9월 20일, 서울 도봉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학생들 여러 명의 얼굴에 대결레를 문지르는 '대결레 체벌' 사건 발생.** 이튿날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고 해당 교사의 사과가 있었지만, '훈육 차원에서 했던 일'이라며 문체를 축소.
- ▷ 2011년 9월 21일,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기소. 교육감 직무정지.
- ▷ 2011년 9월 28일,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회적 파장과 찬반 논란이 심한 일부 의제에 대하여는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시의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발언.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지속 추진과 지연, 무산까지 다양한 해석 나와.
- ▷ 2011년 9월 28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 11곳, 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 정책 등을 방조해 온 임승빈 권한대행체제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교과부에 경질 촉구.
- ▷ **2011년 9월 3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울시의회로 송부.**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 입법 예고는 언제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 ▷ **2011년 10월 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주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의회 제출에 즈음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교육청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발의안을 중심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
- ▷ **2011년 10월 5일, 광주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
- ▷ 2011년 10월 6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 3.4차 보고서(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5년마다 한번씩 이행보고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 대해 최종 권고 발표. 체벌 금지, 청소년 비혼모·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치 마련, 학생의 의견 존중, 종교 자유 보장, 정치활동에 대한 아동의 능동적 참여 보장 등을 권고.
- ▷ 2011년 10월말,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학생인권조례안 최종안 확정. 그러나 교과부에 의해 새로 임명된 이대영 부교육감은 교육청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
- ▷ 2011년 11월 17일,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선포
- ▷ 2011년 11월 22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후퇴 없는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 전달
- ▷ **2011년 11월 25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성사**
- ▷ **2011년 12월 13일, 교총 등 보수단체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결성.** 서울학생인권조례 부결 촉구

- ▷ 2011년 12월 14일,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촉구 서울시의회 농성 돌입. 각계 농성 지지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촉구 성명 발표.
- ▷ 2011년 12월 1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등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주민발의안 심의하다 결정 연기
- ▷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통과(15명 교육위원 중 찬성 8명, 기권 1명, 반대 6명)에 이어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

학생인권조례 쟁점 조항 비교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p>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p>	<p>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과정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책에 협력하고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p> <p>④ 보호자는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학생이 올바른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p>	<p>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p>	<p>제2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p>

<p>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p>	<p>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p> <p>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p>	<p>제11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p> <p>③ 학교에서는 교육적 목적의 활동을 제외한 강제노동은 금지된다.</p> <p>제19조(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생은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p>	<p>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p>	<p>제14조(표현의 자유) ②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복은 제1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정할</p>

<p>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p>	<p>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p>	<p>수 있다.</p>
<p>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p>	<p>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3조(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p>		
<p>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p> <p>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4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두발, 복장 관련 조항)</p> <p>③ 학생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p> <p>④ 학교는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